

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안내

□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

○ 등록 절차



□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

- (제한 원칙)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제한
- (제한 예외) 단,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 가능
 -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지원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
 - ※ 예시) 농민수당·아동수당,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정책발행 상품권
 -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·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
 -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판매자인 개별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플랫폼형 사업장은 예외 인정
 - ※ 매장 자체는 비영리 성격, 개별 농민·소상공인이 직접 수익을 취하는 경우여야 함
 -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('25. 6월 기준) 내 농협 농자재판매장
 -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유형 분류상 마트·슈퍼·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('25. 6월 기준) 내 농협 하나로마트